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3

제출연월일 : 2018. 7. .

제 출 자: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 (설치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
- 2) (운영단계)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단계로 변경
- 3)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 예·경보 실시 구분
 - 가)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
 - 나) 시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 이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
 - 4)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를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내용 으로 변경
 - 가)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시대책본부 운영규정 반영

- 1) 자연재난 · 사회재난 지대본 편성기준, 실무반 임무
 - 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분야 추가, 재난대응 필수협업체계(13개

협업기능) 반영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8년 4월 17일 ~ 5월 8일(21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자연재난과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남시 재난안 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장 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 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기도 재난 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 8. 그 밖에 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시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본부장: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2. 차장: 부시장
 -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
 -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단장·소장. 다만, 해당 국장·단장·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③ 시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본부장: 시대책본부 업무 총괄
 - 2. 차장: 시대책본부장 보좌

-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시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 제5조(직무대행) 시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시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시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시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연재난: 별표 4

- 2. 사회재난: 별표 5
- ② 시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 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 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시대책본부장 또는 시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시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 ② 시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 1. 시대책본부 운영 여부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 단장 · 소장
 -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 4. 그 밖에 시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시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시대 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시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시대책본부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시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 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시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시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 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시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이하 "시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시대책본부장 이 되고, 부의장은 시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총괄조정관(재난안전 총괄 국장)

- 2. 통제관(해당 재난수습 주관 국장 · 단장 · 소장)
- 3. 관할 소방서장. 다만,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 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 5. 그 밖에 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의장은 시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시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 ⑤ 시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시대책본부회의는 시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 ② 시대책본부장은 시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시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시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⑤ 시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 ⑥ 시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시대책본 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 제16조(재난현장 조치) ① 시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시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시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 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시장(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시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 관의 장, 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21조(재난수습 홍보) 시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 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 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3.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4.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 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입	과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최 문 환
안	팀 장 직위·성명	안전관리팀장 전 용 신
자	실 무 자 직위·전화번호	전 용 신 (031-790-5109)

<u>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7호</u>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1)	재난정보 •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 난상황관 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중앙 및 도·시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	2)	상황보고 서 작성 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 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바)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구	분	업무와 역할
	4) 레기카카이다	사)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자)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앵성시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1) 긴급생활 안정지원 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 반	2) 재난현장 환경정비 반	가) 환경오염물질(재단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 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
	4) 시설피해 응급복구 반	

구 분	업무와 역할
5) 에너지: 급피해. 설 기: 복구반	시 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능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6) 재난수·홍보반	다)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 자원 원반	리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 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 반	자)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현황 파악나) 교통통제상황 모니터링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라) 긴급수송 지원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 역서비 지원반	

구	분	업무와 역할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10) 자원봉 사 지원 및 관리 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 서 유지 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 조·구급 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 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임기관 지	역재난관리책 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 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1) 상황관리 총괄팀	나) 재난현 ² 다) 각종 지	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시사항 처리 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 황총괄반 2) 수습상황 파악팀 			황 파악 및 전달·처리 고수습본부, 시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	지원반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나. 협업기능 반	5) 에너지공· 기능복구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6) 재난수습	홍보반	
	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	반	
	9) 의료·변 원반)역서비스지	

10) 자원봉/ 관리반	사 지원 및
11) 사회질서	유지반 유지반
12) 수색, 구	조・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 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하남시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지원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_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안전총괄과 환경보호과 안전총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과
8. 농림축산식품부 나. 저수지 사고		농식품위생과 농식품위생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가. 감염병 재난	희망경제과 희망경제과 - 희망경제과 건설과
10. 보건복지부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정책과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환경보호과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상수도과
11. 환경부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보호과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환경보호과
	마. 황사	환경보호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희망경제과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건설과
	나. 고속철도 사고	_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건설과
	라. 도로터널 사고	건설과
10 7F7FH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상수도과
13. 국토교통부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교통정책과
	사. 지하철 사고	교통정책과
	아. 항공기 사고	_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_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축과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_
14 페이스 기 버	나. 조수(潮水)	
14. 해양수산부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_
	가. 원자력안전 사고	_
16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17) 2] ~]	가. 화재·위험물 사고	안전총괄과
17. 소방청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총괄과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10 12 2	가. 산불	공원녹지과
19. 산림청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1	1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시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총괄 조정 관	차장	본부 장
		비상단계 근무명령	0				
1	복무관리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0				
		관계 기관 파견 요구		0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0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0				
2	상황관리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 단회의		0			
	0.00.0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0		
		재난 예보·경보 실시		0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0				
3	시 대책본부	시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0		
5	운영상황	시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0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0			
4		피해조사결과 보고				0	
		재난복구계획 수립					0
_	시	회의 소집	0				
5	대책본부 회의	회의결과 통보			0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0	
	특별재난지	재난사태 선포 건의					0
6	역 선포 등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0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0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시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하남시 비상단계

<i>汁</i> .	하片	まへ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끝	날조?	정관	재난안전 총	괄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해당 재난업	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과장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1)상황관리 총 괄 반 (5명)	_ , , ,	 재난상황관리반 5명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실	무			- 반	구 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2)협업기능
				반(α)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희망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감사담당관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빈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원봉사센터
카) 사회질/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 ² ·구급반	• 하남소방서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 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1 0) <u> </u>	₹ II				
본	부	장	시장	가장			
차		장	부시장	쿠시장			
총괄	소조	3관	재난안전 총	배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	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해당 재난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 괄 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 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İ		
	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3명) 라) 행정지원팀 (1명)	・자치행정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응급복구반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농식품위생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희망경제과
2)협업기능 반(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감사담당관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 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원봉사센터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하남소방서
지역 재난관	반리책임기관(β)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육군제55사단, 한 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 중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필	말조전	성관	대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해당 재난업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총 18+α+β명	
					과장급 1명	
	및 전파, 재 - 재난 총괄부서 직원 - 나상 황 관 리	- 재난안전상황실 2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	총 괄 반 (17+a	/-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명) 다) 상황관리총 괄 및 상황 · 재난 총괄부서 직원 5명 (7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자치행정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농식품위생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희망경제과
2)협업기능 반(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감사담당관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 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원봉사센터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하남소방서
지역 재난관	난리책임기관(β)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육군제55사단, 한 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중 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 원
·범)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 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하남시 비상단계

부	장	시장				
	장	부시장				
조정] 관	재난안전 총독	· · ·			
제	관	해당 재난수?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당	관	해당 재난업	구를 담당하는 부	서의 과장		
		인 원		총 6+a명		
		반 장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1)상황관리 총 괄 반 (5명)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5명)	 재난상황관리반 5명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무	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2)협업기능 반(a)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 건설과, 건축	• 정보통신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농식품위생과					
			응급복구반	상수도과, 하수도과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 희망경제과		
			기능복구반			
1	조정제	장 관 관 관 · · · · · · · · · · · · · · · ·	장 부시장 조정관 재난안전 총 후 제 관 해당 재난수 후 당 관 해당 재난업부 인 원 반 장 1)상황관리 총 괄 반 (5명)	장 부시장 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제 관 해당 재난숙급 주관부서 국장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 인 원 반 장 지난정보 수집 나 상황관리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5명) (5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감사담당관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 비스 지원반	•보건정책과,
차) 지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원봉사센터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하남소방서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됩	말조7	정관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가) 재난정보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총 괄 반 수집·분석 - 재난안전상황실 1명			

	및 전파, 재 난상황관리 팀(5명) 다) 상황보고서	- 재난 종괄무서 직원 2명
(1917)	작성팀 (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12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마) 행정지원팀 (1명)	・자치행정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농식품위생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0) = 1 0 - 1 1-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희망경제과
2)협업기능 반(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감사담당관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 비스 지원반	•보건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원봉사센터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하남소방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육군제55사단, 한
		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 재난관	난리책임기관(β)	경기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중
		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
		원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١٠	710		"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됩	발조전	성관	재난안전 총	선 총괄담당 국장 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통	제	관	해당 재난수			
담	당	관	해당 재난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 괄 반 (17+α 명)	세단성정원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2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3명)	
	라) 상황관리총 괄 및 상황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주관부서 직원 5명
	마) 행정지원팀 (1명)	・자치행정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농식품위생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희망경제과
2)협업기능 반(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감사담당관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 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차) 지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원봉사센터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하남소방서
지역 재난관	반리책임기관(β)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육군제55사단, 한 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중

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 원

비고(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시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 –	_ 0	
	시장 			장	부	본
쿠시장			장		차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정관	알조기	총	
	} 등	급 주관부서 국장	해당 재난수	관	제	통
	¹ 서의 과장	무를 담당하는 부	해당 재난업	관	당	담
	총 9+α+β+γ명		인 원			
	과장급 1명		반 장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3명) · 재난수습 주관부 (3명) · 재난수습 주관부 (9명) 나) 수습상황과 아 의 아 사회재난 총괄부				
편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3명					
	• 복지정책과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반	무	실
	·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정보통신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2)협업기능			
품위생과		반(a) 라) 시설피해 · 건설과, 건축과, 주 응급복구반 상수도과, 하수도과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 희망경제과 기능복구반				
	· · 공보감사담당관	바) 재난수습				
	·사회재난 종괄무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3명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정보통신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농식품 상수도과, 하수도과 ·희망경제과	다) 수습상황파 악팀 (6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총 괄 반 (9명) 2)협업기능	반	무	실

		ੇ ਹਿਮੀ	
		홍보반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 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차) 지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원봉사센터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하남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육군제55사단, 한 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 사 경기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 기중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미크/크므바	현장지원반(y)		·해당 재난관리 국·소 소속 직원 등

-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가. 풍수해 (태 풍 · 호우·대설)	1)하남시 비상단계	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 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2 단계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 연 재 난	나.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	1)하남시 비상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3) 비상2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

	단계	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			
사	른 경우			
회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재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난				